

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21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안전 향상을 위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, 기존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특례의 기한이 짧아 모든 대상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고, 정밀진단 시 타 법령상의 점검·검사·진단 자료를 활용하는 근거가 없어 비효율적인 행정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. 또한, 철도시설을 교체 중인 경우에도 불필요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, 성능평가를 최초로 실시하는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.

이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
·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밀진단·성능평가 특례 실시기한 연장(부칙 제29617호)

정밀진단·성능평가 추진상황과 제도 시행주기 등을 감안하여 특례 실시 기한을 2025.12.23.(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내)까지 연장하고자 함.

나. 정밀진단 시 타 법령상 점검·검사·진단 자료 활용 근거 마련(안 제28조제3항)

정밀진단을 하는 경우에도 성능평가와 동일하게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한 점검·검사·진단 자료(3년 이내)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.

다. 교체중인 철도시설의 정밀진단·성능평가 생략(안 별표2, 안 별표4)

철도시설을 교체 공사 중(설계 중인 경우 포함)인 경우 국토부장관 승인을 거쳐 해당 시설에 대한 정밀진단·성능평가를 생략하고자 함.

라. 성능평가 최초 실시시기 명확화(안 별표4)

성능평가의 최초 실시시기를 ‘준공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’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마. 건축물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선(안 별표5의2)

기계설비에 대한 정밀진단·성능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건축물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인정하는 기술인의 전문분야에 기계설비 분야를 추가하고자 함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철도시설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: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

- 전자우편 : asylumcity@korea.kr

- 팩스 : 044-201-5673